

제245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임실군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관급 공사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예고합니다.

2015. 2. 3.

임실군의회의회장

1. 개정이유

- 임실군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규모를 기존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하여 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들의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당한 임금체불을 미연에 방지하여 현장근로자들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적용대상사업 금액 “5천만원 이상의 공사”를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 적용금액 조정(안 제3조)

3. 참고자료

가.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 (2014.09. 25. ~ 2014.10.15) 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비행정 규제
- 4)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 붙임
- 5) 성별영향평가분석 : 붙임
- 6) 관련법령 발췌문 : 붙임

임실군 조례 제 호

임실군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5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적용대상사업)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적용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p> <p>1. <u>5천만원</u> 이상의 공사 2.·3. (생 략)</p>	<p>제3조(적용대상사업) ----- ----- ----.</p> <p>1. <u>3천만원</u> ----- 2.·3. (현행과 같음)</p>

임실군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3. 미첨부 사유

비용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아님

4. 작성자

재무과장 박상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4A전북임실055		
정책명	임실군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관리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전라북도 임실군	
	부서명	재무과	
	담당자명	염진선	전화번호 063-640-2193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4년 10월 21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재무과)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안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성별 구분, 성별 고정관념, 성별 특성 반영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p>「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4년 10월 28일</p> <p style="text-align: center;">주민생활복지과장</p> <p style="text-align: center;">(담당자/연락번호 : 정나겸/063-640-2124)</p> <p>재무과장 귀하</p>			

관련(상위)법령 발췌문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